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65
------	-----

2023. 6. 1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6.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정수용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시정 주요업무 및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한시기구의 연장 및 신설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
(1개) 및 기존 한시기구(3개)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기한 연장
 - (신설) 한강사업추진단 신설
 - ▶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존속기한 1년 신설
(’ 23.7.17. ~ ’ 24.7.16.)
 - (연장)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 ▶ 존속기한 1년 연장(’ 23.8.19. ~ ’ 24.8.18.)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한강사업추진단을 1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현행 한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됨.

나. 서울시 한시기구의 현황과 설치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정원규정’)에 따르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8조 제1항)¹⁾.
- 한시기구는 조례로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최장 6년)할 수 있음(제8조 제4항·제5항)²⁾.

1)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2)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 시·도는 3급 이상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제21조)³⁾, 한시기구의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도, 행정수요 전망 등을 평가해 존속기한의 연장을 승인하고 있음.
- 서울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실시된 조직개편(2022.7)에서 기존의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을 폐지하고,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함(2022.8.19).
- 당시 한시기구를 정규기구화하고 연차별로 법외 임시기구를 폐지하겠다는 ‘한시·임의기구 정비계획’에 따라, 주택공급기획관과 균형발전기획관을 한시기구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환경기획관만 법외 임시기구로 남아 있음.

< 서울시 법외 임시기구 현황 >

직 급	종 전	현 행	비 고
3급 (3→1개)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기획관	
	주택공급기획관	-	한시기구로 전환
	균형발전기획관	-	한시기구로 전환

다. 한시기구 신설(안 제21조제4항)

- 서울시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 (2023.3.)에 따라 4대 핵심전략별 10대 과제를 설정하고, 한강을 글로벌 방문객이 찾는 광역적 관광·여가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임.

3)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 (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 개요 >

비전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			
4대 핵심전략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
10대 전략과제	자연성 회복 자연친화적 환경	한강연결 수상산책 이동성 확장	감성조망명소 문화예술공간 축제·행사	성장거점 강화연계 주거지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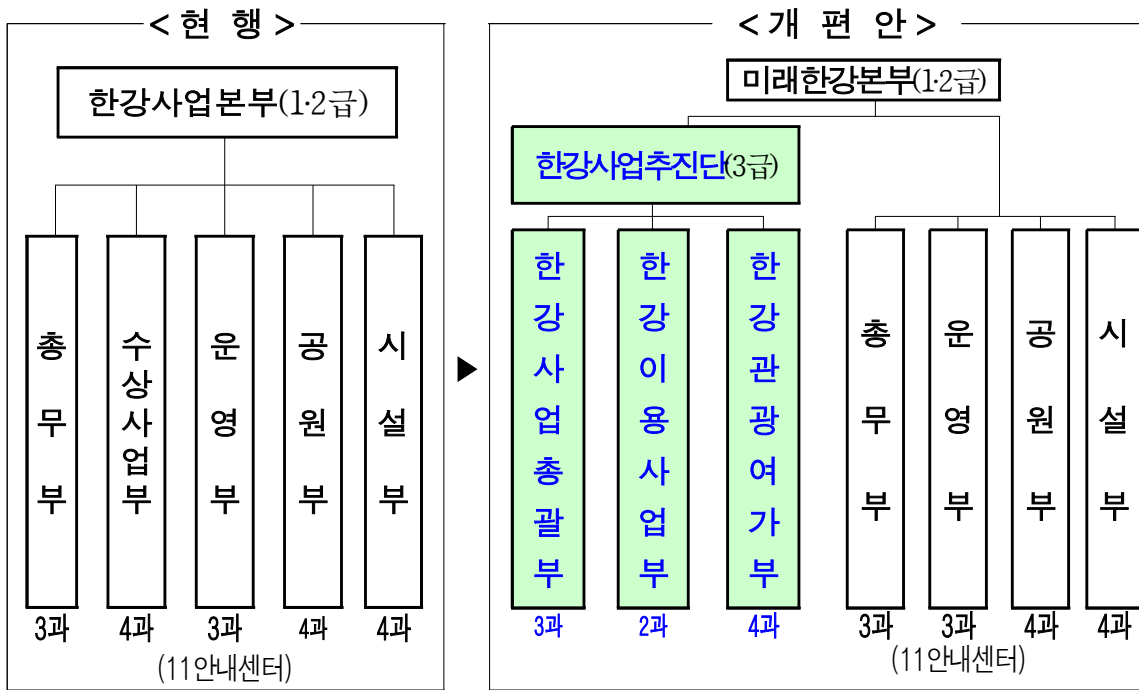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는 11개 실·국에서 55개 사업이 분산 추진되는 서울시의 행정 역량이 총결집되어야 하는 대형사업임.
- 이에 지난 조직개편(2023.4)에서 서해벚길 복원과 서울항(여의도) 조성 등 핵심전략 과제를 담당하는 한강사업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한강본부' 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상운영과' 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강화함.
- 그러나 실·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민간투자 유치 등 사전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며, 중앙부처(환경부 등) 및 인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업무 등을 '미래한강본부장' (1·2급)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과 담당 실국 현황 >

실 국	사업 수	주요 사업
한강사업본부 (1·2급)	19개	서울항, 서해벚길 복원, 자연형 물놀이장·캠핑장, 한강 공원 보행 접근시설 정비 등
미래공간기획관 (3급)	8개	서울링, 노들섬 조성, 제2세종문화회관 등

관광체육국 (2·3급)	8개	열기구 서울야경체험, 한강 흥프로젝트 등
도시계획국 (2·3급)	4개	여의도 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디자인정책관 (2급)	4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야간경관 활성화 등
푸른도시여가국 (2·3급)	4개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지정 등
기타 (안전총괄실 외 4개 실국)	8개	곤돌라(균형발전본부), 한강 자율주행버스(도시교통실), 한강교량 경관조명 개선(안전총괄실) 등

- 개정안은 3급 한시기구로 ‘한강사업추진단’ 을 신설하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한강사업총괄부, 한강이용사업부, 한강관광여가부)를 개편해 전담 관리토록 할 계획임.



- 미래한강본부의 기존 조직과 인력은 11개의 한강공원, 수상시설 등 방대한 관할구역과 시설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시설 조성 등이 포함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민선8기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과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미래한강본부장(1·2급)을 보좌하는 한강사업추진단(3급)을 한시기구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라. 한시기구 연장(부칙 제3조)

- 현행 한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앞서 행정안전부에 3년의 존속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1년 연장(2023.8.19 ~ 2024.8.18)으로 협의됨.

< 서울시 한시기구 현황 >

부서명	주요업무
주택공급기획관 (3급)	·주택공급정책 총괄 및 조정 ·규제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청년주택, 상생주택, 역세권주택 등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균형발전기획관 (3급)	·지역별 핵심거점 조성 추진업무 총괄 및 조정 ·녹지생태도심 조성, 국제교류복합지구 건립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재생과 개발·정비 방식을 융합한 도시공간 혁신 총괄 ·대형 프로젝트 사업별 공정관리
자원회수시설 추진단 (3급)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및 기존 시설 고도화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사전절차 이행, 주민 설득, 민원 해결 ·기존 소각시설(4개소) 고도화·현대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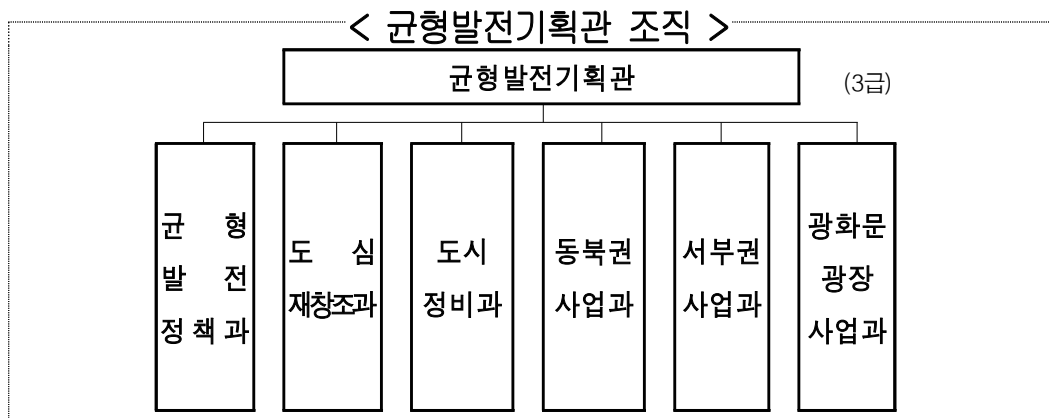
- 주택공급기획관(1관 5과 1반, 162명)은 지난 1년간 신속통합기획 확대(총 81개소), 재건축 3대 규제(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재건축 초과이익제) 개선, 모아타운·주택 도입,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공급 등을 추진함.

- 향후에도 주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안전망 구축, 전세 사기 위기의 주거약자 보호대책 마련, 주택공급 분야 제도 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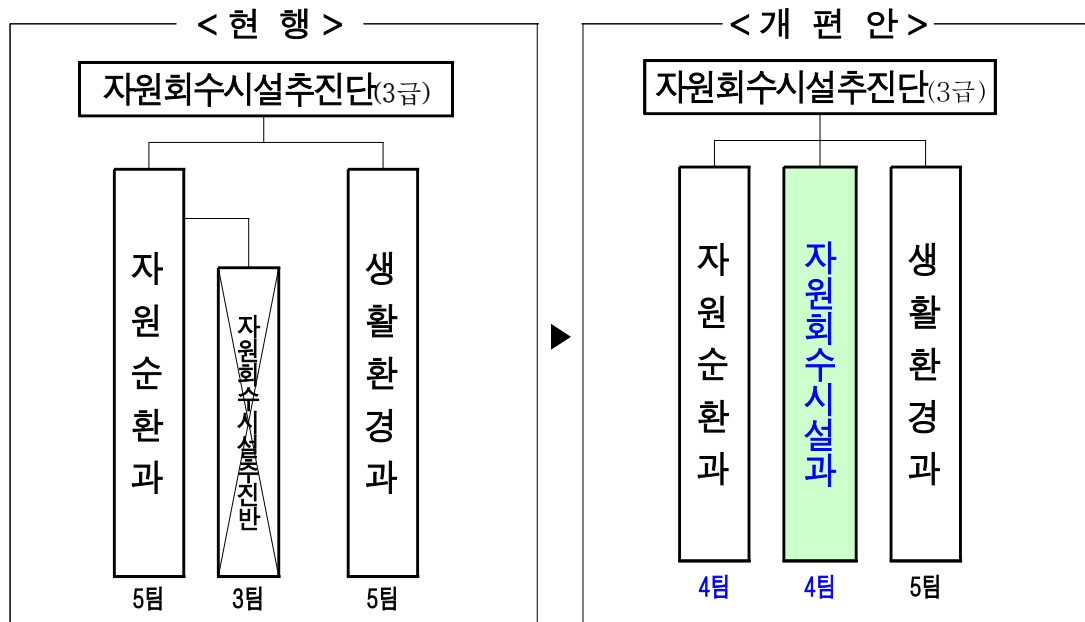


- 균형발전기획관(1관 6과, 129명)은 녹지생태도심 조성(도심권), 창동·상계 일대 신성장 거점 조성(동북권), 신경제 중심거점 조성(서북권), 광화문광장 개장 등을 추진함.

- 앞으로도 도심전체 녹지공간 구상 개발·정비계획 수립, 권역별 성장 전략 수립·실행, 남산 곤돌라 설치 등의 업무를 계속 추진해야 함.



- 자연회수시설추진단(1단 2과 1반, 75명)은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기존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함.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적기 건립과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자원회수시설추진반(4·5급)을 자원회수시설과(4급)로 확대·격상할 예정임(7.1. 시행)



- 향후 폐기물 원천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현행 한시기구들은 주택공급, 권역별 특화발전,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시정 핵심과제의 추진을 위해 신설되었고, 대부분 중장기 업무에 해당되어 1년 만에 목표 달성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담당 업무들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의견조정, 종합적인 행정력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전담 조직이 부재한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신설된 지 1년에 불과한 한시기구들의 조직 안정화와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안전부가 한시기구 존속기한의 연장을 협의하면서 2023년 말까지 마지막 법외 임시기구인 환경기획관(3급)의 폐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직 관리와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5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시정 주요업무 및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한시기구의 연장 및 신설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1개) 및 기존 한시기구(3개)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기한 연장

- (신설) 한강사업추진단 신설
 - ▶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존속기한 1년 신설('23.7.17. ~ '24.7.16.)
- (연장)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 ▶ 존속기한 1년 연장('23.8.19. ~ '24.8.1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협의 완료

라. 기타

- (1) 입법예고('23. 5. 19. ~ 5. 23.)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효원(☎2133-672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한강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한강사업추진단을 두며, 한강 사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강이용증진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상이용 활성화 및 수상여가 공간 확충에 관한 사항
3. 수상관광레저 콘텐츠 강화 및 자연성 회복에 관한 사항

조례 제844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2023년 8월 18일”을 “2024년 8월 18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제4항의 한강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것으로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관련 비용추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박효원 (☎ 2133-6729)